

[변상금 사전통지] 공시송달공고

국유재산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706-1) 무단점유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, 「동법 시행령」 제71조(변상금)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49조(변상금)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(폐문부재)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처분내용 :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
(무단점유기간 : 2021.1.1.~2024.7.7.)
- 처분근거 : 국유재산법 제72조, 시행령 제71조, 시행규칙 제49조 등
-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 (2024.10.14.~2024.10.29.)
- 점유내역 :

재산소재지	점유자	점유면적	용도	부과기간	변상금 예상액	의견제출기한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706-1	정성*	11㎡	판매점	2021-01-01 2024-07-07	1,092,420원	2024-10-26

- 공고장소 :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철도공단 게시판, 현장부착 등

6. 공고내용 :

- 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71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에 대해 사전통지하였으나 미송달되어,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서 미제출 시 "의견없음"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

2024. 10.

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